# < 변 경 대 비 표(1) >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 키움 쿼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7.02.03

# 3. 변경 사항 :

- 매입 청구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17시 이전: 2영업일 → 3영업일, 17시 경과 후: 3영업일
   → 4영업일)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하향 조정)

####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
	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u>다음 영업일</u> 에 공고되는	납입한 영업일의 <u>제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	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
	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으로 한다.	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
	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3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u>제4영업일</u>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
	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	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
	다)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관한 사항		
제2부. 11. 매입, 환매, 전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T	T
환기준 1) 매입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2부. 14.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세액공제 (현행과 동일)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 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7.01.0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u>상기의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u> 시행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2015년 5월 6일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설정약 관을 반영한 내용이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2015.1.1.부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선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u>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u>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u>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u>
액에서 공제합니다. [2017.01.01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 [간이투자설명서]

LEGITALE ONL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7 시 이전: <b>제 2 영업일</b> 기준가격 적용	17 시 이전: <b>제 3 영업일</b> 기준가격 적용
- 매입방법	17 시 경과후: <u>제 3 영업일</u> 기준가격 적용	17 시 경과후: <b>제 4 영업일</b> 기준가격 적용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5. 투자실적 추이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	-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
정보	자를 대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	자를 대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
(1) 과세	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종합	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u>12%</u>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 적은 금액의 <u>13.2%</u> 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2015.1.1부터)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	서 <u>공제합니다.</u>
	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종	-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

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	거나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이거나 1</u>
	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및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차등 적용되오니, 관련 내용은 투자설명
	서, 소득세법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